구분 면제･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･감면의 방법 ⑪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(조특법§66) - 영농조합법인 \* 2014.1.1. 개정시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분을 과세로 전환 (2015.1.1.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) -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-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(1,200만원 × 조합원수 × 사업연도월수 12 한도) ⑫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(조특법§67) - 영어조합법인 -어로어업소득(3,000만원 × 조합원수× 사업연도월수 한도) - 어로어업소득외의 소득 중 (1,200만원 × 조합원수 × 사업연도월수 12 한도) ⑬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(조특법§68) - 농업회사법인 \* 2014.1.1. 개정시 수입금액 50억원을 초과 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을 과세로 전환 (2015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) -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-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： 50억 원 한도 - 부대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：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％감면 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(조특법§85의6) - 사회적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-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-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와 그후 2년은 100%, 그 다음 2년은 50% 감면 (1억원+ 취약계층 등에 해당 하는 상시근로자 수 × 2,000 만원 한도) \* 최저한세 적용 제외 ⑮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(조특법§96) - 내국인이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- 1호 임대 : 30% 감면(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등 75%) - 2호 이상 임대 : 20% 감면 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50%) ⑯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(조특법§99의9) -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 내 창업기업 - 5년간 100% 감면 그 이후 2년간 50% 감면 - 중견･대기업은 다음 한도 : 투자누계액 50%＋상시근로자수 ×1,500만원(청년 등 2,000만원)